

미니시리즈
노동법 극장

구직급여 받다가 재취업 성공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

- 재취업에 성공한 B 씨 이야기 -



“구직급여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던 B씨
얼마 전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.
재취업 성공의 기쁜 마음을 안고 고용센터에
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지만
지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
이유가 무엇일까요?”

오예~
하나님, 부처님, 예수님, 공자님
아버님, 어머님 감사합니다ㅠㅠ

축하합니다
합격하셨습니다

조기재취업수당
수급이 불가능합니다

아니?왜요?
구직급여 받다가
재취업했는데?





조기재취업수당이란

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대기기간이 지난 후 **구직급여 수혜기간(120~270일)의 절반(60~135일)**에
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안정적 일자리에
재취업 했을 때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
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.



“재취업 일찍 성공하면
바로 조기재취업 수당
받을 수 있나요?”

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01

대기기간이 지난 후
재취업한 전날을
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
½ 이상 남긴 상태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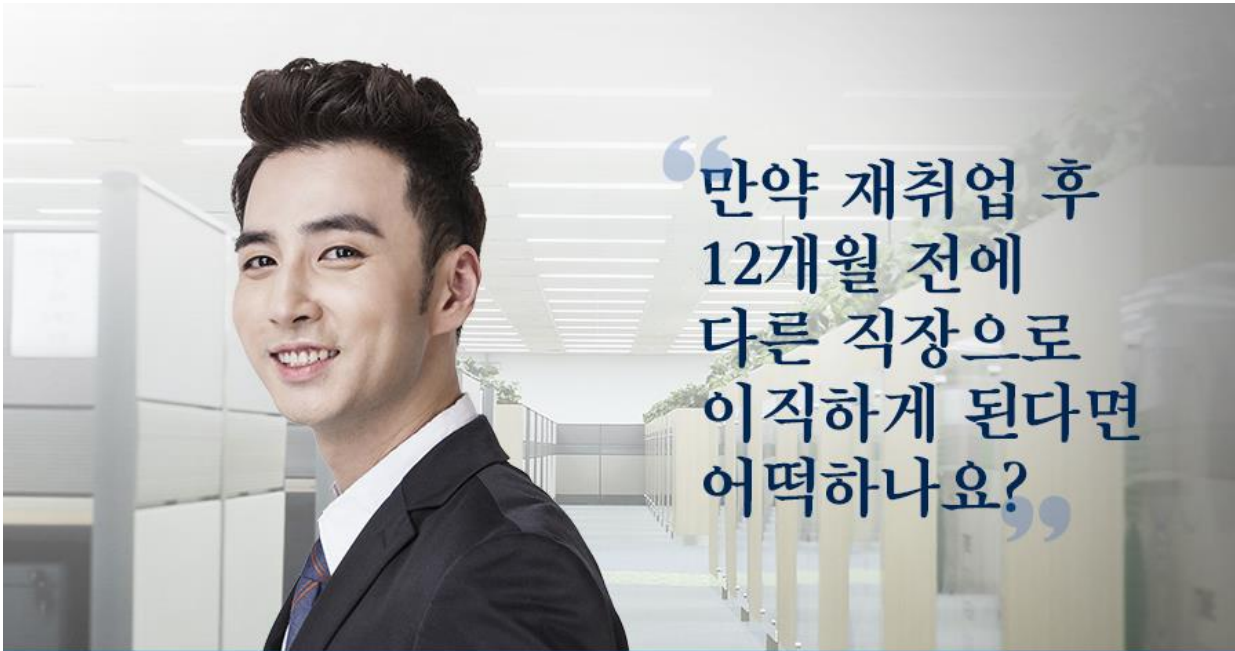
02

재취업하여
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
(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)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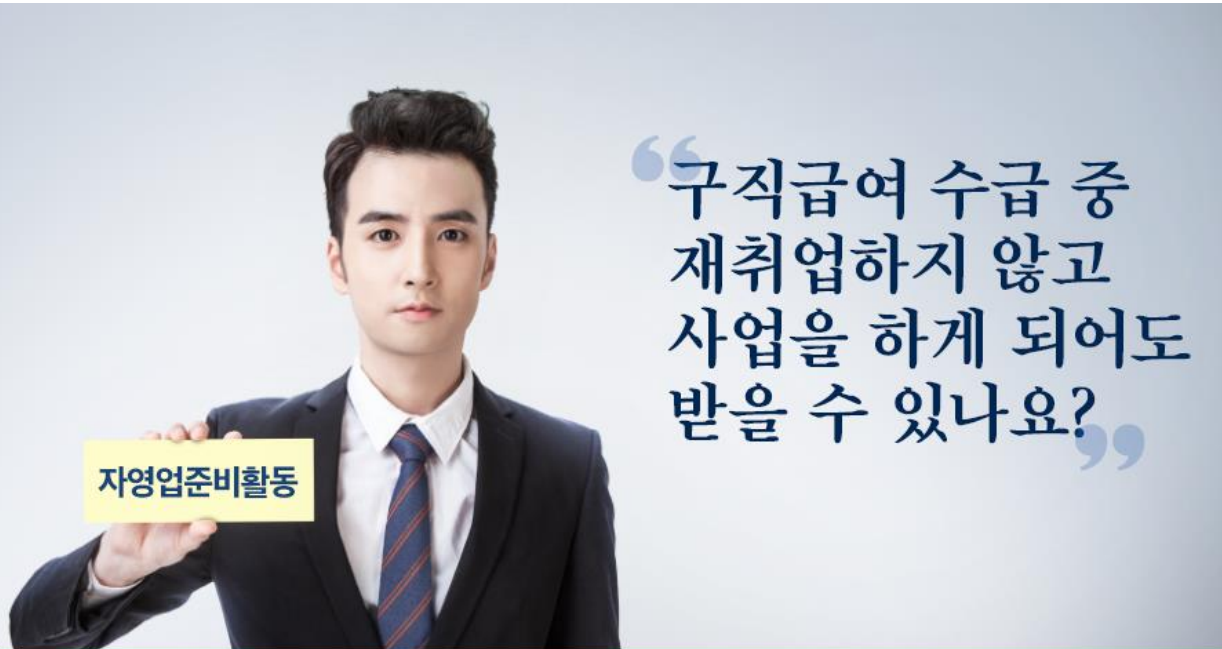
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
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
다시 고용되지 않고
구직급여 수급자격
신청 전에 채용이
약속되지 않을 것

따라서 새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,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



“만약 재취업 후
12개월 전에
다른 직장으로
이직하게 된다면
어떡하나요?”

**재취업 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
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
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**



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신고하고
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

**단,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
지속해야만 지급됩니다.**

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
늦춰서는 안되겠죠?
조기재취업수당이 여러분의 재취업을
응원합니다!



더 자세한 내용은?



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누리집 <http://www.moel.go.kr>

고용보험 누리집 <https://www.ei.go.kr>